제목 : RE: Re:RE: @[공유] 대산 CGN 현장실사계획 제출(안)

2025-08-26 09:00:09

보낸사람: 천형원(Cheon Hyungwon) <hw.cheon@hanwha.com>

받는사람: 안흥엽 <h22633@hps.co.kr> 참조: '정종문' <h10378@hps.co.kr>외 10

첨부파일 1개 (45.7 KB) 전체다운로드

●한국플랜트서비스 비밀유지계약서(NDA) 표준안(국문) 회신 20250820.docx (45.7 KB)

수신: HPS / 안흥엽 리더님

발신: 한화파워시스템 / 천형원 프로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아래 보내주신 NDA 법무 검토 요청 건 당사 법무 의견 아래 보라색 글씨 및 첨부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검토하시어 이상없으시면 confirm 부탁드리고 2부 인쇄후 서명하시어 아래 주소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204, 한화파워시스템 복합발전사업팀 천형원 프로(010-5194-2550)

-Quote-

1. 동영상을 저장된 파일 형태의 영상(유형 정보)와 실시간 송출되는 영상(무형 정보)으로 구분할 것인지

답변:유형물은 시각, 촉각 등 오감으로 인지 가능한, 고정된 실체와 부피를 보유한 물리적 실재를 의미하며, 무형물은, 이렇게 정의된 유형물을 제외한 물리적 실재 여부를 오감으로 인지 곤란한 실재를 의미합니다. 제2조 제1호의 무형물은 그 중 재산적 가치 있는 정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동영상이나 영상이라 하더라도, 동영상이나 영상이 USB나 저장장치에 저장된 형태로 고정된 저장장치로 인식되고 비밀표식을 보유 하고 있는 상태로

비밀수령자에게 인도되었다면 저장 매체는 유형물로 분류됨이 원칙입니다.

위 동영상과 영상이라 하더라도, 저장장치를 인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비밀정보 수령자에게 재생 또는 재현의 1회적 방법에 의해 무형적 실체(내용) 가 전달된 경우,

해당 동영상이나 영상에 담긴 정보나 내용 그 자체는 무형물로 정의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존재가 무형물 내지 유형물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동일한 동영상이나 영상이라 하더라도, 저장장치 등 매체 그 자체는 유형물로, 반면 저장장치를 재생 또는 재현하는 방법에 의해 전달 된 내용은 유형물로 분류되는 것이

실무에서는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이슈를 반영해 첨부와 같이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으나,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해석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2. 영상을 일괄하여, 무형 정보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인지

답변: 위 1)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본 이유로 동영상 등 저장매체 그 자체는 유형물로 분류함이 원칙이고(저장매체도 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다만, 무형물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의미하므로,

실무적으로는 같은 대상물에 대해서는 유형물 관리에 관한 방법만 따르면 무방할 것입니다

-Unquote-

감사합니다.

천 형 원(Cheon Hyungwon)

프로 / 복합발전사업팀(Sales) / AM사업부

한화파워시스템

51542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204 창원사업장

T 055 260 1449 M 010 5194 2550

E-mail <u>hw.cheon@hanwha.com</u>

www.hanwhapowersystems.com



Hanwha Power Systems

From: 안흥엽 <h22633@hps.co.kr>

Sent: Wednesday, August 20, 2025 8:11 PM To: 천형원(Cheon Hyungwon) < hw.cheon@hanwha.com>

Cc: '정종문' <h10378@hps.co.kr>; '이은섭' <h11394@hps.co.kr>; '이계성' <ks84059@hps.co.kr>; 이은석(EUNSEOG LEE)